하와이 보건부(Hawai‘i Department of Health, HDOH)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집행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관련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계층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HDOH는 40 C.F.R. Part 5 및 7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금지된 행위에 반대할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HDOH 차별금지 조정관은 조정 또는 규정 준수 노력 및 개정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Title VI,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1972년 교육 개정안(Education Amendment) Title IX, 및 1972년 연방수질오염통제법개정안(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 Section 13(이하 통칭하여 연방차별금지법이라고 함)을 포함하여 40 C.F.R. Part 5 및 7(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부터 연방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차별금지)에 의해 집행된 차별금지 요구사항에 관한 문의 접수를 담당합니다.

이 고지문이나 HDOH의 차별금지 프로그램,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Valerie Kato
Acting Non-Discrimination Coordinator
Hawai‘i Department of Health
1250 Punchbowl Street, HI 96813,
(808) 586-4400
doh.nondiscrimination@doh.hawaii.gov

HDOH 프로그램이나 연방 지원을 받는 활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위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정관에게 연락하거나 당국 웹사이트 http://health.hawaii.gov를 방문하여 차별 관련 불만 제기 방법과 제기처를 확인하십시오.

HDOH는 연방 차별금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나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연방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조사, 절차 또는 청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 지원 또는 참여했거나, 연방 차별금지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된 관행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 협박, 강압, 차별하지 않습니다.

HDOH 프로그램 또는 공개 회의에 대한 언어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청하시려면 HDOH 차별금지 조정관에게 (808) 586-4400으로 전화하거나 doh.nondiscrimination@doh.hawaii.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HDOH에서 요청된 편의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HDOH 고용과 관련된 불만은 HDOH 인사부(HDOH Human Resources Office)에 전화 (808) 586-4520 또는 이메일 doh.hroeeo-ra@doh.hawaii.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대한 언어 통역을 요청하시려면 다음에 문의해 주십시오: HDOH Non-Discrimination Coordinator(소재지 1250 Punchbowl Street, Honolulu, HI 96813) (전화: (808) 586-4400 또는 이메일: doh.nondiscrimination@doh.hawaii.gov). 본 문서의 서면 번역을 요청하기 위해 구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Non-Discrimination Notice (05/09/2024)
Korean